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2085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5. 11. 17.

판결 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1) 1,9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33㎡ 지상 개장 2개(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5, 28, 27, 26, 7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 지상 정화조(같은 도면 표시 10, 37, 38, 39,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 및 지하), 화덕(같은도면 표시 12, 31 내지 36,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 테라스(같은 도면 표시 14, 29, 30,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7㎡), 벽돌 담장, 콘크리트 옹벽, 화목 등 일체의 지장물을 철거하여 위 'ㄴ'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53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9. 1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가항 기재 토지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53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5. 9. 1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피고의 경기 양평군 E 대 757㎡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24,370,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1,99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대 75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33㎡ 지상에 피고의 개장 2개(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가 있고,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5, 28, 27, 26, 7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 지상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도로를 따라 약30m 길이의 세멘블럭조 담장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 부분 지상에 피고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또한, 위 'ㄴ' 부분 내에는 피고의 정화조(같은 도면 표시

10, 37, 38, 39,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 및 지하), 화덕(같은 도면 표시 12, 31 내지 36,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 테라스(같은 도면 표시 14, 29, 30,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부분 7㎡)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목 등 지장물들이 있다.

다. 원고 토지 중 위 'ㄴ' 부분 64㎡의 2010. 8. 16.2)부터 2015. 9. 15.까지 기간임료는 535,800원이고, 2015. 8. 16.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월 9,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피고로부터 원고 토지를 점유할 권리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지상 개장 2, 'ㄴ' 부분지상 정화조, 화덕, 테라스, 벽돌담장, 콘크리트 옹벽, 화목 등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6.부터 2015. 9. 15.까지 원고 토지 중 'ㄴ' 부분을 점유한 데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535,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합계액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 득금 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변제의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지급을 청구한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15.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6.부터 피고의 위 'ㄴ' 부분 토지 인도일또는 원고의 원고토지 소유 상실일까지 월 9,900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위 'ㄴ' 부분인도완료일 또는 피고의 피고 토지 소유 상실일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 부당이득금 산정의 종기를 피고의 피고 토지 소유 상실일까지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다).

3. 수목 벌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0.경까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위 'ㄴ' 부분 지상에 담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 소나무 4그루(수령 40년 이상 1그루, 수령 30년 이상 3그루)와 단풍나무 5그루를 벌채하였는바, 그 시가 상당액인 24,370,3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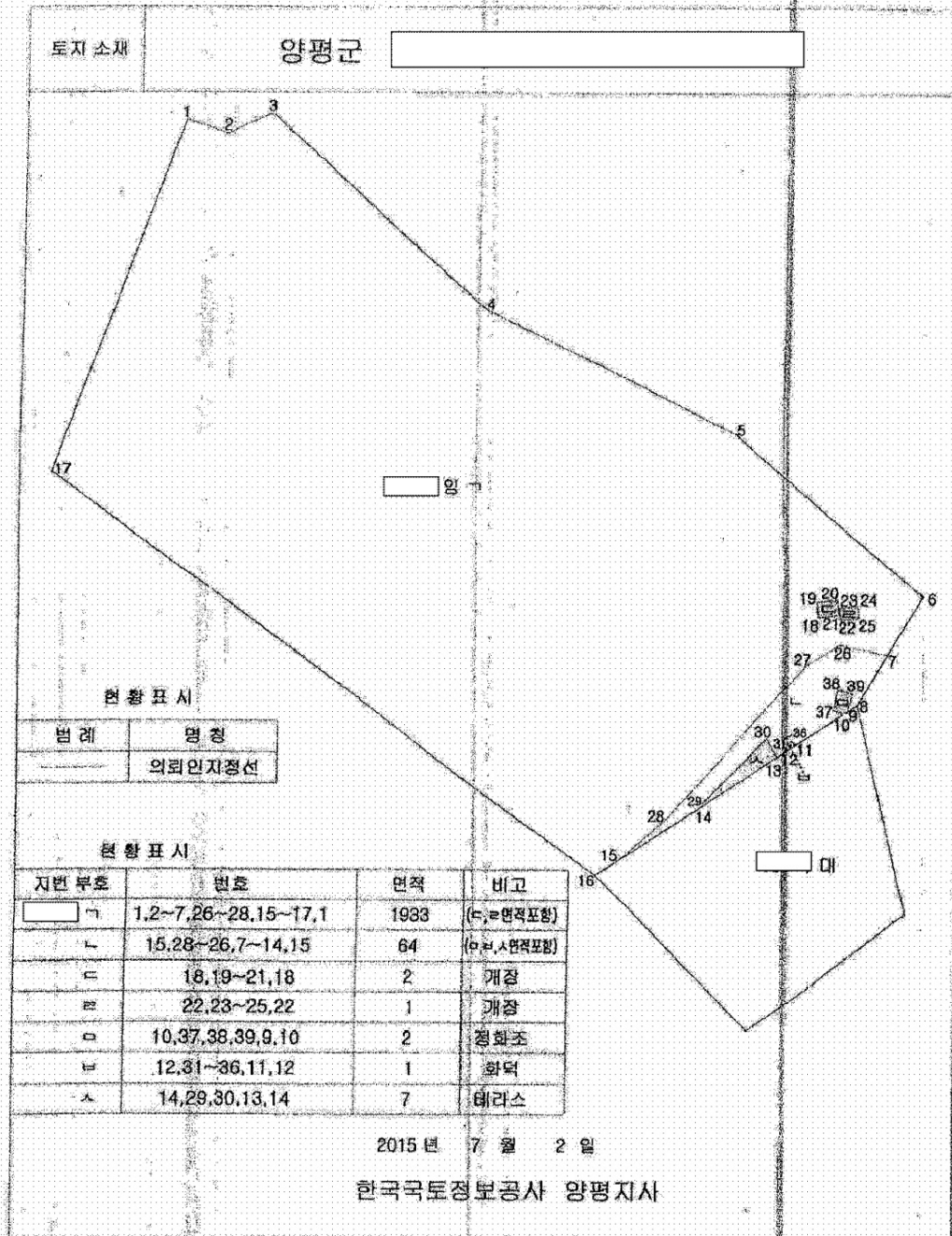
살피건대, 원고 토지 중 '나' 부분 지상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령을 가진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존재하였고, 이를 피고가 벌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감 정 도



- 1) 원고는 청구취지에 도로명 주소인 '경기 양평군 D 임야'라고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기로 한다.
- 2) 피고의 피고 토지 취득일이다.